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8가합350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나201708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8가합35004 판결

전 문

원고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윤근, 이지은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준형, 조동선, 황영준

피고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정

담당변호사 심기종, 이신광

변론 종결 2021. 3. 19.

판결 선고 2021. 4. 16.

주 문

1. 피고 D과 주식회사 F 사이에 2017. 10.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7년 제92호의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위 주식회사 F이 2017. 10. 25. 피고 E에 대하여 한 액면금 480,920,000원, 수취인 E,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성남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의 발행행위를 각 취소한다.

2.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주식회사 F에 각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주식회사 F의 관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F의 사내이사 및 지배인이며, 피고 E은 F의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본소), I(반소), 서울고등법원 J(본소), K(반소)]을 대리하였던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로 위 사건을 수임하고 담당하였다.

나.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6. 4. 18. 소외 주식회사 M과 국방부 경상 시설단이 시행자인 'N신축공사'와 관련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주식회사 M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 A과 F은 2016. 12. 1.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라 F에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해주었고, F이 원고 A에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 및 최종정산금(회수한 가설자재를 폐기, 망실, 보관 등으로 나눠 검수를 마친 다음 청구한 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6,868,894원이다(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이라 한다).

1	2016. 11. ~ 2017. 4.	137,496,800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8367 확정판결	갑 제1호증
2	2017. 5. ~ 2017. 8.	82,764,303	창원지방법원 2017차전4183 지급명령결정	갑 제2호증
3	2017. 9. ~ 2018. 2.	98,434,020)창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가단110212 판결에서는 미지급금액을 98,438,020원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공시송달 내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져 원고 A이 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 각 전자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미지급금액의 합계는 98,434,020원이다.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0212 확정판결	갑 제3, 66호증
4	2018. 3. 및 최종정산금	28,173,771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9가소106522 확정판결	갑 제64호증
합계	346,868,894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6. 12.경 F과 국방부 경상 시설단이 시행자인 'N신축공사'와 관련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B은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에 따라 F에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해주었고, F이 원고 B에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6,001,318원이다(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이라 한다).

1	2016. 12. ~ 2017. 3.	75,385,4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차514 지급명령결정	갑 제4호증
2	2017. 4. ~ 2017. 5.	20,000,00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소7214 강제조정결정	갑 제5호증
3	2017. 6. ~ 2018. 4.	90,615,895	전자세금계산서	갑 제6호증
합계	186,001,318			

3) 원고 C은 2017. 2. 1.부터 2017. 3. 31.까지 F에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였음에도 F로부터

노무비 119,85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F은 원고 C에게 채무변제를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대신 노무비를 98,930,000원으로 확정하기로 합의하여 2017. 11. 2. 원고 C에게 '채무금 98,930,000원, 변제기한 2017. 11. 30.까지 50,000,000원, 2017. 12. 30.까지 20,000,000원, 2018. 1. 30.까지 28,930,000원'으로 정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공증인가 O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455호, 이하 '이 사건 제3 채권'이라 한다).

다. F의 피고들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1) F은 2017. 10. 25. 피고 E에게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F, 수취인 피고 E,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성남시'로 한 액면금 480,92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P 증서 2017년 제344호, 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

2) F은 2017. 10. 30. 피고 D에게 '채무금 400,000,000원, 변제기한과 방법 2017. 11.부터 2018. 2.까지 매월 100,000,000원을 총 4회에 걸쳐 상환'으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7년 제92호, 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고 한다)

라. F의 근저당권부 채권 및 이 사건 배당절차 등

1) F은 2014. 9. 4. 경 Q으로부터 평택시 R 답 662m²에, S으로부터 평택시 T 답 661m²에, 각 공사금액 65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5. 1. 30.인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고 준공예정일을 도과하게 되었다. 이후 F과 Q, S은 F이 공사를 재개하고 Q, S은 위 공사대금 중 잔금 합계 1,093,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F에 위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F은 2015. 6. 11. Q 소유의 평택시 R 토지에 관하여 2015. 6. 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01,15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S 소유의 평택시 T 토지에 관하여도 2015. 6. 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01,15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S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

2) Q, S은 F에 대하여 위 각 건물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F은 2017. 1. 4. 피고 E이 소속되어 있던 법무법인 L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Q, S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본소), I(반소)].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7. 10. 19. Q, S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각 601,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Q, S은 F에 각 601,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후 S 소유의 위 평택시 T 토지에 관하여 2017. 1.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U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F은 위 경매절차에서 S이 배당받을 잉여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631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2. 28. 위 경매에 관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배당할 금액 761,065,948원 중 집행비용 10,583,505원을 공제한 나머지 750,482,443원을 배당하면서 2순위로 S의 전부채권자인 F에 451,524,192원을 배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4) 피고 E은 2018.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1690호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F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U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한 배당금 또는 공탁금 출급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2. 1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인 F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각 송달되어 2018. 3. 15. 확정되었다.

5) 피고 D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1959호로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F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U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한 배당금 또는 공탁금 출급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2. 2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인 F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각 송달되어 2018. 5. 3. 확정되었다.

6) 대한민국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년 금제566호로 이 사건 배당금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V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7) 원고들은 2018. 6. 7.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8. 7.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다(이 법원 2018카합50323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8. 12. 10.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순위로 피고 E에게 200,000,000원, 4순위로 피고 D에게 38,366,45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지급금지가처분결정 등의 지급제한 사유로 피고들은 위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7, 19, 20, 22, 27 내지 30, 64, 6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10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들이 F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이 사건 제1 공정증서 작성시점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제2 공정증서 작성 시점에 모두 F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편 피고 E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되고 이 사건 제1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7. 10. 25.이 아니라 위와 같은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F과 피고 E의 위임계약 체결일인 2017. 1. 4.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는 사건위임계약이 아니라 약속어음 발행행위이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F의 무자력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적극재산

(1) 다툼 없는 적극재산 합계 1,070,368,870원

W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 채권 552,782,870원, 국군재정관리단에 대한 기성공사대금 채권

517,586,000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판단 시점인 2017. 10. 25. 및 2017. 10. 30. 당시 F의 적극재산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평택시 R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 165,700,000원

갑 제31 내지 34호증, 을가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X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위 R 토지의 감정가액은 2018. 9. 12.

기준 305,700,000원인 사실(따라서 사해행위 판단 시점인 2017. 10. 25. 및 2017. 10. 30.

당시의 감정가액도 유사할 것임이 추인된다), 위 R 토지에 관하여 Y조합을 근저당권자, 채무자 Q,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하는 2013. 12.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사해행위

판단 시점인 2017. 10. 25. 및 2017. 10. 30.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4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R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 중

165,700,000원(= 305,700,000원 - 140,000,000원)을 적극재산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평택시 T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 56,806,410원

갑 제37, 38호증, 을가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위 T 토지의

감정가액은 2017. 3. 31. 기준 260,820,000원인 사실(따라서 사해행위 판단 시점인 2017. 10.

25. 및 2017. 10. 30. 당시의 감정가액도 유사할 것임이 추인된다), 위 T 토지에 관하여 Y조합을

근저당권자, 채무자 S,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하는 2013. 12.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U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2. 28. 1순위로 Y조합에 204,013,59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T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 중 56,806,410원(= 260,820,000원 -

204,013,590원)을 적극재산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한편 위 R 및 T 토지에 설정된 Q, S에 대한 각

근저당권부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각 근저당권부 채권의 합계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1,202,300,000원이므로 전액이 적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Q,

S이 소유한 위 각 부동산에 다수의 압류와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위 T 토지에 관하여는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권 전액을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저당권에 의하여 지급이 확실히 담보되는 부분만을 적극재산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피고들의 주장대로 1,202,300,000원 전액을 적극재산으로 평가하더라도 F의 적극재산은 합계 2,463,829,870원인데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소극재산의 합계는 3,554,910,728원이므로 F이 사해행위 여부 판단 시점에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평택시 Z 토지 가액 191,161,000원

갑 제40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X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위 Z 토지의 감정가액은 2018. 9. 12. 기준 331,161,000원인 사실(따라서 사해행위 판단 시점인 2017. 10. 25. 및 2017. 10. 30. 당시의 감정가액도 유사할 것이임이 추인된다), 위 Z 토지에 Y조합을 근저당권자, 채무자 AA,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하는 2013. 12.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사해행위 판단 시점인 2017. 10. 25. 및 2017. 10. 30.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4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Z 토지는 191,161,000원(= 331,161,000원 - 1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5) 소결론

결국 사해행위 기준 시점인 2017. 10. 25. 및 2017. 10. 30. 당시 F의 적극재산은 합계 1,484,036,280원(= (1) 1,070,368,870원 + (2) 165,700,000원 + (3) 56,806,410원 + (4) 191,161,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극재산

(1) 다툼 없는 소극재산 합계 1,111,350,115원

① 주식회사 AB에 대한 채무 22,346,921원, ② W공제조합에 대한 융자금 채무 370,700,000원, ③ A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3,925,900원, ④ AD에 대한 채무 3,907,750원,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체납 보험료 210,765,510원, 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납부할 벌금 1,000,000원, ⑦ 국세 체납분 117,960,720원, ⑧ 수성구 지방세 체납분 781,540원, ⑨ 광명시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4,243,970원, ⑩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채무 6,200,000원, ⑪ AE 외 81인에 대한 임금채무 합계 166,709,637원, ⑫ AF에 대한 채무 114,345,871원, 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대한 채납 추정차위반 과태료 400,000원, ⑭AG에 대한 채무 10,258,315원, ⑮ 주식회사 AH에 대한 채무 5,141,781원, ⑯ AI에 대한 채무 29,950,000원, ⑰ AJ에 대한 채무 24,795,000원, ⑱AK 공제회에 대한 채무 17,917,200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판단 시점인 2017. 10. 25. 및 2017. 10. 30. F의 소극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A에 대한 채무 348,001,589원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이 사건 제1 공정증서 작성 당시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제2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 A은 F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F은 그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건설가설자재를 계속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8. 3. 31.경 반납하였으므로,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점 이후 원고 A에게 가설자재가 모두 반납된 2018. 3. 31.까지 원고 A이 F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료 채권 및 가설자재에 관한 최종정산금 채권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임대료 및 최종정산금 채권을 모두 포함한 원고 A의 F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346,868,894원이다.

F의 원고 A에 대한 위 채무는 F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점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2) 까지 더하면 합계 348,001,589원이 당시 F의 원고 A에 대한 채무로서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이 2017.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L 배당절차에서 이미 111,002,49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근거로 F이 원고 A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원고 A이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2016. 11. 24.자 창원지방법원 2016카단11659 채권가압류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 A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의 범위(2016. 11.부터 2018. 3.까지의 임대료 및 최종정산금 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B에 대한 채무 192,078,636원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이 사건 제1 공정증서 작성 당시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제2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 B은 F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F은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2018. 4. 30.까지 건설가설자재를 계속하여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채권 발생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지속적으로 임대료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B의 F에 대한 합계 186,001,318원의 임대료 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F의 원고 B에 대한 위 채무는 F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점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3) 까지 더하면 합계 192,078,636원이 당시 F의 원고 B에 대한 채무로서 소극재산에 포함된다(원고들은 임대료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대부분 가산하여 소극재산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 채무 이외에는 사해행위 판단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C에 대한 채무 98,930,000원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이 사건 제1 공정증서 작성 당시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제2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 C은 F에 대하여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에 기한 노무비 채권 119,587,000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단지 F의 원고 C에 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시점이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시점 이후인 2017. 11. 2.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3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 C은 사해행위 판단 시점에 존재하던 119,587,000원의 노무비 채권을 98,930,000원으로 감축하여 지급하기로 F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피보전채권액을 98,93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C의 F에 대한 채권 98,930,000원이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본 원고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의 원고 C에 대한 위 채무도 F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F의 원고 C에 대한 채무 98,930,000원은 F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5) W공제조합에 대한 채무 1,783,860,058원

갑 제21, 5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W공제조합, AM 주식회사, AN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W공제조합이 계약 보증 및 선금금 보증을 한 F과 국군재정관리단 및 해군군수사령부 사이의 공사계약(AO 공사)은 F의 공정 지연, 공사 중단 등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2017. 12. 5. 해지된 사실, W공제조합이 위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2019. 11. 20. 국군재정관리단 및 해군군수사령부에 보증금으로 합계 1,783,860,058원을 지급한 사실, W공제조합이 위 공사계약상 F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시작한 시기는 각 2015. 12. 16., 2016. 11. 22., 2017. 1. 24., 2017. 3. 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이 사건 제1 공정증서 작성행위 당시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제2 공정증서 작성행위 당시에 이미 W공제조합은 F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으로부터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F의 채무불이행으로 공사계약이 해지된 점에 비추어 보면 구상금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W공제조합이 국군재정관리단 및 해군군수사령부에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구상금 채무의 발생이 현실화되었는바, F의 W공제조합에 대한 구상금 채무 1,783,860,058원은 소극재산에 합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인 2017. 10. 25. 및 2017. 10. 30. 당시 F의 W공제조합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고,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장래의 채무를 소극재산에 합산함에 있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들과 제3의 채권자인 W공제조합을 달리 평가하여야 하므로 W공제조합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는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인 F의 사해행위 당시의 소극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제3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달리 평가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이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장래의 채무를 소극재산에 합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AP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0,686,330원

갑 제18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평택시 Z 토지에 관하여 2017.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카단162 가압류결정에 기한 AP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청구금액 20,686,330원)이 인정되므로, F의 AP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0,686,330원은 소극재산에 합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과 AP 주식회사 간의 합의로 위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F과 AP 주식회사가 2017. 11. 10.자로 합의하였다는 것이어서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인 2017. 10. 25. 및 2017. 10. 30. 당시 F의 AP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인정되지 않는 부분(주식회사 AQ, AR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갑 제29, 42호증, 을가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AQ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주식회사 AQ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가소966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인용금액 17,453,81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기초하여 평택시 R 토지에 설정된 F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청구금액 18,190,217원) 2015. 10. 30. 그 취지를 등기한 사실, 주식회사 AQ은 2020. 1. 6.에 이르러서야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에 대한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을가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주식회사 AQ은 위 압류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4. 1.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가소966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추가로 F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사실(청구금액 20,234,550), F은 2016. 6. 1. 주식회사 AQ에 20,234,5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주식회사 AQ에 대한 채무는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인 2017. 10. 25. 및 2017. 10. 30. 이전에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갑 제45, 4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16435호 사건에서의 화해권고결정으로 F이 AR 주식회사에 대하여 23,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46, 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AR 주식회사는 2017. 3. 9. F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L 배당절차에 참가한 사실, 위 배당절차에서 2017. 8. 25. AR 주식회사에 대하여 23,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고 배당이 종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배당표 확정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F의 AR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인 2017. 10. 25. 및 2017. 10. 30. 이전에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8) 소결론

결국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인 2017. 10. 25. 및 2017. 10. 30. 당시 F의 소극재산은 합계 3,554,906,728원(= (1) 1,111,350,115원 + (2) 348,001,589원 + (3) 192,078,636원 + (4) 98,930,000원 + (5) 1,783,860,058 + (6) 20,686,33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무자력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의 소극재산 3,554,906,728원이 적극재산 1,484,036,28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F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이 사건 제1 공정증서 작성 당시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제2공정증서 작성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이전부터 있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참조).

그러나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 D은 F의 사내이사였고, 피고 E은 F의 소송 수행을 담당한 변호사로서 F의 재력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 작성 이후 약 4개월 후에 피고들이 각 F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F이 피고들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피고들이 주장하는 각 채권을

사실상 우선하여 변제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하였으며 그에 대한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F의 위 각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는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F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도 F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 D은 F의 사내이사이자 지배인이고 피고 E은 F과 Q, S 사이의 민사소송을 대리하였던 법무법인 L 소속으로서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인바, 피고들과 F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들은 F의 자금 사정 및 변제 자력 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 작성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 1)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3. 19.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A

1	피보전채권 ①채권 발생 시기 2016. 11. ~ 2017. 4.채권 금액 137,496,800원지연손해금 78,599,199원총 합계 216,095,999원4)창원지방법원 2017가단8367호 사건에서 'F은 원고 A에 137,49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6.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원금 137,49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6. 14.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17,100원, 2017. 6. 15.부터 2021. 3. 19.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7,582,099원을 모두 합하면 216,095,999원이다.	216,095,999원	갑 제1호증
2	피보전채권 ②채권 발생 시기 2017. 5. ~ 2017. 8.채권 금액 82,764,303원지연손해금 43,230,177원독촉절차비용 78,300원합계 126,072,780원5)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차전4183사건에서 'F은 원고 A에 82,764,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보 송달일(2017. 10. 1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원금 82,764,30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7. 10. 10.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44,204원, 2017. 10. 11.부터 2021. 3. 19.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2,685,973원, 독촉절차비용 78,300원을 모두 합하면 126,072,780원이다.	126,072,780원	갑 제2호증
3	피보전채권 ③채권 발생 시기 2017. 9. ~ 2018. 2.채권 금액 98,434,020원지연손해금 39,724,195원합계 138,158,215원6)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0212사건에서 'F과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 A에 98,438,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10.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발행한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따르면 실제 지급을 명하여야 하는 원금은 98,434,020원이다. 따라서 원금을 98,434,020원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10. 6.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559,806원, 2018. 10. 7.부터 2021. 3. 19.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6,164,389원을 모두 합하면 138,158,215원이다.	138,158,215원	갑 제3, 66호증
4	피보전채권 ④채권 발생 시기 2018. 3. 임대료 및 최종정산금채권 금액 28,173,771원지연손해금 7,844,076원합계 36,017,847원7)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9가소106522사건에서 'F과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 A에 28,173,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원금 28,173,77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9. 7. 16.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184,622원, 2019. 7. 27.부터 2021. 3. 19.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659,454원을 모두 합하면 36,017,847원이다.	39,017,847원	갑 제64호증
합계	519,344,841원		

나) 원고 B

1	피보전채권 ①채권 발생 시기 2016. 12. ~ 2017. 3.채권 금액 75,385,423원지연손해금 44,208,904원독촉절차비용 284,000원총 합계 119,878,327원8)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차514 사건에서 'F은 원고 B에 75,385,4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보를 송달일(2017. 4. 21.)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284,000원)을 합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원금 75,385,42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21. 3. 19.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4,208,904원, 독촉절차비용 284,000원을 모두 합하면 119,878,327원이다.	119,878,327원	갑 제4호증
---	---	--------------	--------

1	피보전채권 ①채권 발생 시기 2016. 12. ~ 2017. 3.채권 금액 75,385,423원지연손해금 44,208,904원독촉절차비용 284,000원총 합계 119,878,327원8)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차514 사건에서 'F은 원고 B에 75,385,4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보를 송달일(2017. 4. 21.)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284,000원)을 합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원금 75,385,42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21. 3. 19.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4,208,904원, 독촉절차비용 284,000원을 모두 합하면 119,878,327원이다.	119,878,327원	갑 제4호증
2	피보전채권 ②채권 발생 시기 2017. 4. ~ 2017. 5.채권 금액 20,000,000원9) 원고 B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건설가설자재 임대료 원금 20,000,000원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지연손해금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2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계산한다.	20,000,000원	갑 제5호증
3	피보전채권 ③채권 발생 시기 2017. 6. ~ 2017. 9.채권 금액 37,019,074원	37,019,074원	갑 제6호증
4	피보전채권 ④채권 발생 시기 2017. 10. ~ 2018. 4.채권 금액 53,596,821원	53,596,821원	갑 제6호증
합계	230,494,222원		

다) 원고 C

F이 원고 C에게 작성하여 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제5조에는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공정증서에 따른 F의 변제기한은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30.까지, 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30.까지, 28,930,000원에 대하여 2018. 1. 30.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보면 원금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41,232,877원(2017. 12. 1.부터 2021. 3. 19.까지 연 25%로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금 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6,082,192원(2017. 12. 31.부터 2021. 3. 19.까지 연 25%로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금 28,93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2,648,623원(2018. 1. 31.부터 2021. 3. 19.까지 연 25%로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3. 19.까지 발생한 원고 C의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178,893,692원(= 91,232,877원 + 36,082,192원 + 51,578,623원)이다.

라) 원고들의 채권액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2018.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V 배당절차에서 원고 B 17,740,380원,

원고 A 40,853,567원, 원고 C 20,020,055원을 각 배당받았고, 같은 배당절차에서 원고 A이 피고 D이 배당받을 38,366,457원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하였으며, 2019.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S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F의 압류 및 추심권자로서 F의 배당액 44,267,041원을 AJ, 원고 주식회사 A, 원고 C이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각 안분하여 배당받았으므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에서 위 각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61 내지 63호증, 을가 제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V 배당절차에서 배당표는 피고 D의 배당이의 소 제기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에게 배당된 배당금 및 원고 A이 피고 D이 배당받을 배당금을 압류·추심한 부분에 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S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에서 F이 배당받을 배당금(44,267,041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년 금제2795호로 공탁되었고, 해당 공탁금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T 사건에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까지도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절차에서 원고 A과 원고 C이 배당받을 부분에 관하여도 현재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 합계는 928,732,755원(= 원고 A의 피보전채권액 519,344,841원 + 원고 B의 피보전채권액 230,494,222원 + 원고 C의 피보전채권액 178,893,692원)이므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의 작성 원인이 된 F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행위와, F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각 취소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행위는 그 액면금이 480,920,000원이고, F과 피고 D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그 차용금이 400,000,000원이므로 이를 모두 합하여도 원고들의 채권액 합계 928,738,369원의 범위 내인바, F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와 F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취득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아직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 E에게 200,000,000원을, 피고 D에게 38,366,45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들이 현실적으로 이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F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채권을 각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병삼

판사김병휘

판사조현우

별지

98,438,020원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공시송달 내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져 원고 A이 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 각 전자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미지급금액의 합계는 98,434,020원이다.

2) F의 원고 A에 대한 2017. 5. ~ 2017. 8.까지의 임대료 채무 82,764,303원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의 지급명령(2017차전4183)이 2017. 10. 25. 확정되었으므로 임대료 채무 82,764,303원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0.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7. 10. 25.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 1,054,395원과 독촉절차비용 78,300원이 발생하였다.

3) F의 원고 B에 대한 2016. 12. ~ 2017. 3.까지의 임대료 채무 75,385,423원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지급명령(2017차514)이 2017. 5. 9. 확정되었으므로 임대료 채무 75,385,423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2.부터 2017. 10. 25.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 5,793,318원과 독촉절차비용 284,000원이 발생하였다.

4)창원지방법원 2017가단8367호 사건에서 'F은 원고 A에 137,49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6.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원금 137,49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6. 14.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17,100원, 2017. 6. 15.부터 2021. 3. 19.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7,582,099원을 모두 합하면 216,095,999원이다.

5)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차전4183사건에서 'F은 원고 A에 82,764,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2017. 10. 1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원금 82,764,30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7. 10. 10.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44,204원, 2017. 10. 11.부터 2021. 3. 19.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2,685,973원, 독촉절차비용 78,300원을 모두 합하면 126,072,780원이다.

6)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0212사건에서 'F과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 A에 98,438,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10.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발행한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따르면 실제 지급을 명하여야 하는 원금은 98,434,020원이다. 따라서 원금을 98,434,020원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10. 6.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559,806원, 2018. 10. 7.부터 2021. 3. 19.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6,164,389원을 모두 합하면 138,158,215원이다.

7)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9가소106522사건에서 'F과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 A에 28,173,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원금 28,173,77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9. 7. 16.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184,622원, 2019. 7. 27.부터 2021. 3. 19.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659,454원을 모두 합하면 36,017,847원이다.

8)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차514 사건에서 'F은 원고 B에 75,385,4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일(2017. 4. 21.)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284,000원)을 합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원금 75,385,42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21. 3. 19.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4,208,904원, 독촉절차비용 284,000원을 모두 합하면 119,878,327원이다.

9) 원고 B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건설가설자재 임대료 원금 20,000,000원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지연손해금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2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계산한다.